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실용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1.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I. 일반사항

1. 이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7호, 2020. 6. 4]의 규정에 따라 한국뇌연구원(이하 우리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 연구원의 해석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우리 연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우리 연구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다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참여기술인(상주)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다.
 -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된다.
 -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

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 : 2021. 08. 01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4.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같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같음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기계, 전기)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기계, 전기)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지정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하여, 여기서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분야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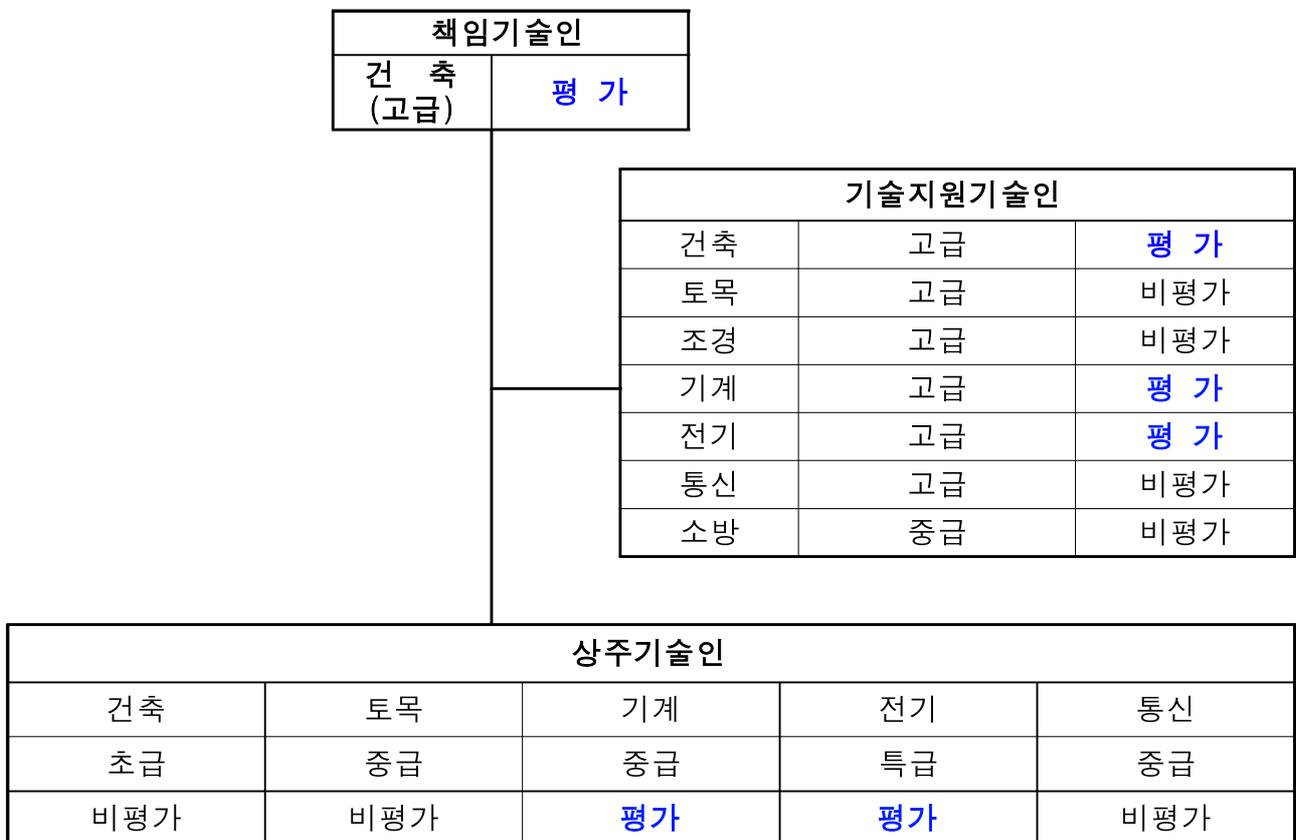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

리 경력” 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2) 「주택법」 제24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용역수행의 조직표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아래와 같다.



-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비평가자는 추후 용역착수 시 발주청의 승인하에 배치한다.
- 소방분야는 전기 및 기계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단, 동시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 기술인 인·일수의 증가 없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가 투입 가능함)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여기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분야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을 말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0. 3. 1, 준공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5.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2. 5. 2부터 2014. 12. 31까지 금액계상[2012. 5. 2.부터 2014.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3. 3. 2, 준공예정일 2015.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5.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3. 3. 2부터 2015. 5. 1까지 금액계상[2013. 3. 2부터 2015.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건축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외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 확인된 실적만 인정한다.

바.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정상태 건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1)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재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pm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가감점 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가감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별표”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2)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60 [2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 해당분야경력	15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나) 직무분야실적	(나) 직무분야실적	9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9점)					
			해당공사규모	점수 (단위:년)				
			3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300억원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	8.1	7.2	6.3	5.4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가) 해당 분야 경력	15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나) 직무 분야 실적	9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9점)					
			해당공사규모	경 력(단위: 년)				
			300억원 이상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 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9	8.1	7.2	6.3	5.4
	(다) 교육 훈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이상 교육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기술 지원 기술인	[10]	<table border="1"> <tr> <td>해당공사규모</td> <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년)</td> </tr>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가) 해당 분야 경력	6																																										
	(나) 직무 분야 실적	3	<table border="1"> <tr> <td>직무분야</td> <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년)</td> </tr> <tr> <td>구분</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점수</td> <td>3</td> <td>2.4</td> <td>1.8</td> <td>1.2</td> <td>0.6</td> </tr> </table>						직무분야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년)					구분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3	2.4	1.8	1.2	0.6																		
	직무분야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년)																																										
구분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3	2.4	1.8	1.2	0.6																																							
(나) 교육훈련 및 기술 자격	1	<p>○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p>※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p>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p>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포함)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p> <p>2) 산정방법</p> <p>○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p> <p>: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70% 인정) × 1.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건설기술용역(단위: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250이상</td> <td>250미만 210이상</td> <td>210미만 170이상</td> <td>170미만 130이상</td> <td>130미만 90이상</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90이상</td> <td>190미만 160이상</td> <td>160미만 130이상</td> <td>130미만 100이상</td> <td>100미만 70이상</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30이상</td> <td>130미만 110이상</td> <td>110미만 90이상</td> <td>9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50이상</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80이상</td> <td>80미만 65이상</td> <td>6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35이상</td> <td>35미만 20이상</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d>-</td> <td>-</td> </tr> <tr> <td>점수</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body> </table> <p>※ 해당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p>	해당 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단위: 억원)					1,000억원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	-	점수	10	9	8	7	6
해당 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단위: 억원)																																												
1,000억원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	-																																								
점수	10	9	8	7	6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다.	(1) 업무 정지 신용도	1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별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 상태 건설도	[3]	○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p><신용평가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BBB- 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 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 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1) 개발· 활용실적	10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p>-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p> <p>○ 활용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p>- 기준점수</p> <table border="1" data-bbox="496 555 1302 786">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2.0점/건당</td> </tr> <tr> <td rowspan="2">활용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0.5점/건당</td> </tr> <tr> <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 <td>0.3점/건당</td> </tr> </tbody> </table> <p>-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496 860 1334 1140">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 (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p>※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p>-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512 1395 1366 1527"> <thead> <tr> <th>구 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인정률</td> <td>100%</td> <td>80%</td> <td>60%</td> </tr> </tbody> </table> <p>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p>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2) 투자 실적	[7]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바.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공사비절 감 기여 기술인	0.2	○ 입찰공고일 기준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인이 제안하여 발주청(인·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 받은 참여 기술인 -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05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05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사. 감 점	(1) 부패행위 관련자	5	<p>○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p> <p>○ 감점적용 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p><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p>